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koita

2014. 3

□ 본 업무편람은 관련법령 및 주무부처 확인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업무수탁기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 및 안내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080-555-9114, 02-3460-9010

I.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 1

1. 신고제도 개관	3
2. 온라인 설립신고	6
3. 온라인 변경신고	8

II. 인정요건 / 11

1. 신고대상	13
2. 준수사항	24
3. 인적요건	27
4. 물적요건	38

III. 신규설립 신고 / 43

1.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45
2. 신고 및 수리	64

IV. 사후관리 / 67

1. 변경신고	69
2. 실적보고 의무	73
3. 사후관리 및 현지확인	75
4. 인정취소	79

V. 부록 / 81

1. 연구소 관계법령	83
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연혁	132
3. 지식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시행 및 확대	137
4. 중소기업의 범위	139
5. 보전산지 전용 추천	141
6. 연구소 주요지원제도	145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I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1. 신고제도 개관
2. 온라인 설립신고
3. 온라인 변경신고

1. 신고제도 개관

1. 제도취지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

* 연구개발활동: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16개 업종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현황〉

구 분	1981	1991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기업부설연구소	53	1,201	9,070	11,810	21,785	24,291	25,860	28,771
연구개발전담부서	0	49	1,361	2,503	7,797	8,884	10,544	12,851

2. 법적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

3. 신고주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4. 신고절차

-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www.rnd.or.kr) 상에서 접수

5. 운영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 수행

6. 인정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수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2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 연구요원의 자격기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학위(경력 포함) 또는 기술 자격이 다르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 차이는 없음
 - 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의 학사이상이 원칙이나, 산업디자인 분야 및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구 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기업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7명 이상
	국외부설연구소	5명 이상
	과기분야 연구원 및 대학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2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그 밖(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①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②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①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 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 졸업 1년 이상) ② 맞춤형·특성화고 : 관련 분야 연구개발활동 4년 이상(기업부설연구소등 1년 이상 경력 필히 포함)
자격증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 물적요건은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공히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함. 다만, 소기업 또는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 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연구기자재는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연구공간 기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
2. 영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

7.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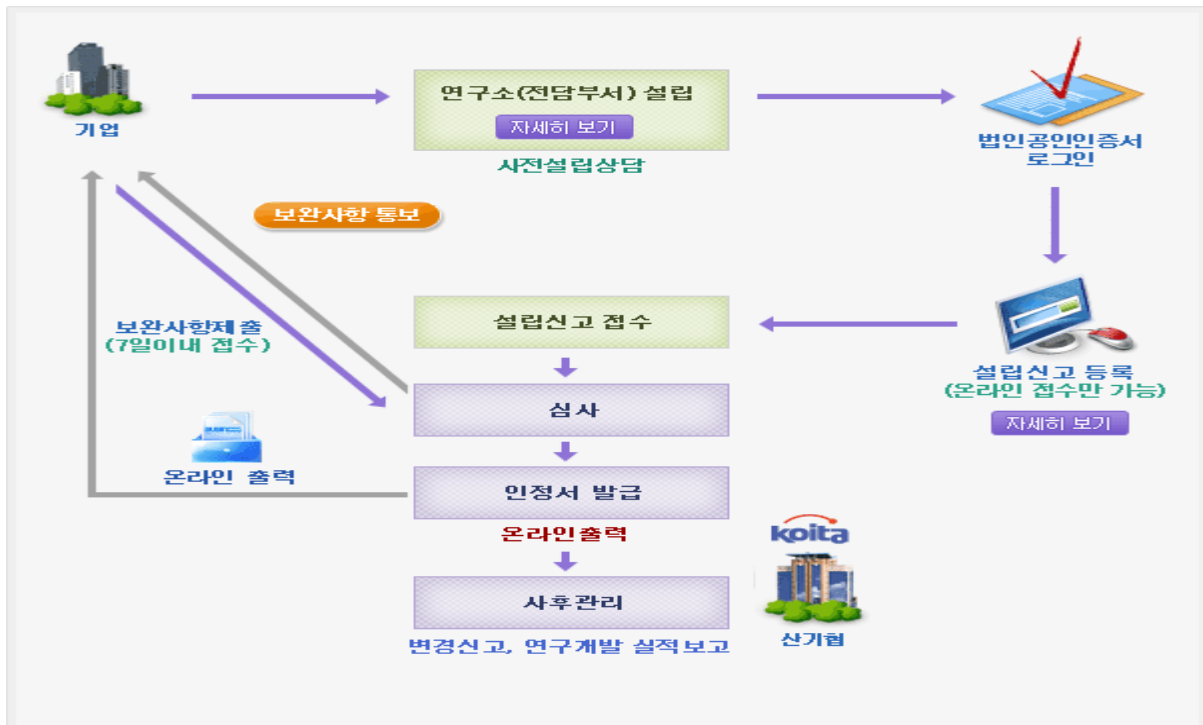
-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사항 확인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에서는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신고한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상세 사항은 업무편람 사후관리 부분 참조)
- 신고요건 미달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을 취소받게 됨(상세 사항은 업무편람 사후관리 부분 참조)

2. 온라인 설립신고

1. 신고방법

○ 인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신고

2. 처리절차



3. 신고서류

구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정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서식보기 ② 연구사업 개요서 서식보기 ③ 연구소 직원현황 서식보기 ④ 연구시설 명세서 서식보기	①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서식보기 ② 연구사업 개요서 서식보기 ③ 전담부서 직원현황 서식보기 ④ 연구시설 명세서 서식보기
첨부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샘플보기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샘플보기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샘플보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샘플보기 ⑥ 회사 조직도 각 1부 샘플보기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샘플보기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샘플보기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샘플보기 회사의 세무회계 사무소를 통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제출받아 사진파일 첨부 -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진파일첨부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급)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서식보기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샘플보기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4. 신고하기

LOGIN 로그인

• 사업자번호(본점)

사업자번호 저장

법인공인인증서가 없나요?



[산기협용 공인인증서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통합관리시스템바로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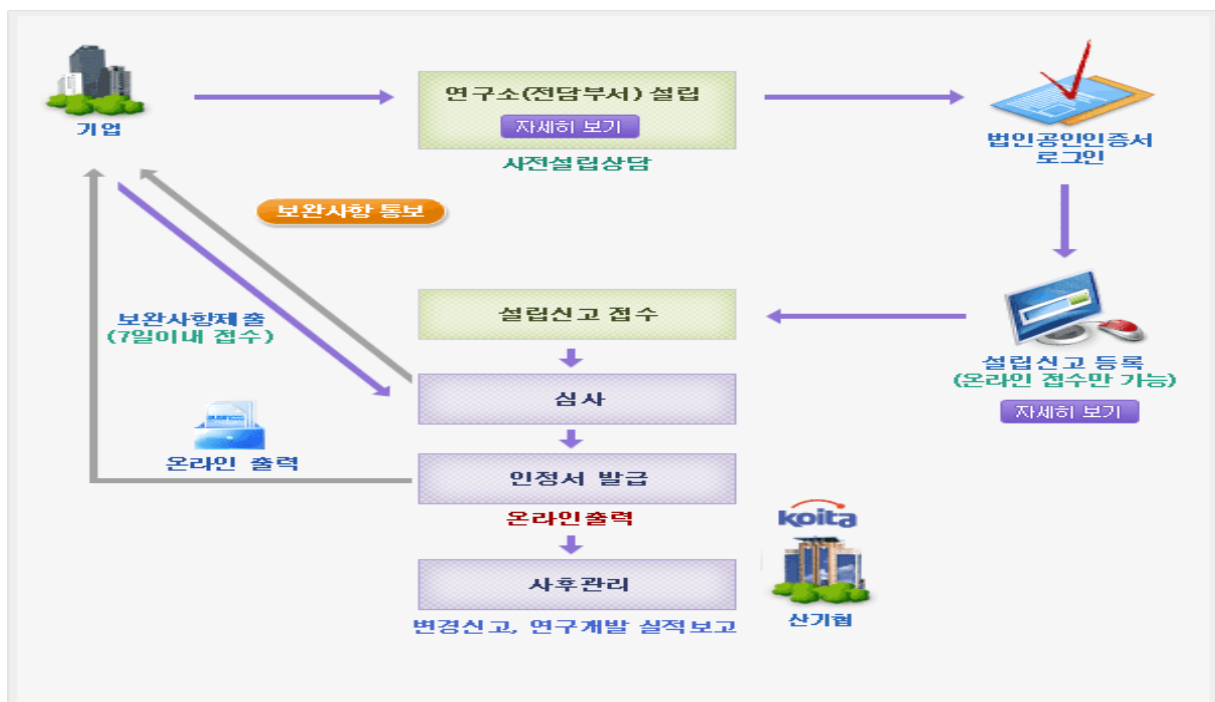
3. 온라인 변경신고

1. 신고방법

- 신고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신고

The screenshot shows the KOITA (www.rnd.or.kr)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신규설립하기', '변경신고하기', '문의하기', '자료실', '사후관리', and '공인인증센터'. Below the navigation is a large banner with a dandelion and text: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변경신고, 사후관리 등을 안내합니다.' To the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신규설립' and '변경신고 (신고내역보기)'. Below these are sections for '연구소직원현황 등 신고된내역 보기는?' and '연구소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이행사항 안내 >>'.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a table of recent notices and a '공인인증서 갱신' (Certificate Renewal) section with details on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2. 처리절차



3. 신고대상 및 신고서류

구분	변경신고사항	신고서류	
		온라인 지정서식	첨부서류
기업체 정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변경신고서 서식보기	-
	명칭(상호)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업종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코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정보처리분야 변경시 해당)
	법정기업유형		중소기업입증서류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연구소 · 전담부서 정보	명칭	변경신고서 서식보기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연구사업개요서 서식보기	사업자등록증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소직원현황 서식보기	-
	소재지 및 면적	변경신고서 서식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도면) lay-out 샘플보기) ·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샘플보기
	연구용 기자재	시설명세서 서식보기	없음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 신청하기 >		양수도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도 신청공문(양수기업) 샘플보기 ·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 양수도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 연구소 인정서 사본(원본은 우편 반납)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 서류 일체 (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된 것)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II 인정요건

1. 신고대상
2. 준수사항
3. 인적요건
4. 물적요건

1. 신고대상

1.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 연구소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 부설연구소 의미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조직으로서 기업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여야함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존재하여야 함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 생산을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Q&A

1.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하는 생산, 영업,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가 가능한 연구개발활동 범위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 및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은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 정의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제5호).

❖ 과학기술분야

-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기타 등의 분야(시행규칙 신청분야 구분)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시행령 별표1]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제2조제5호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매	4711, 4731, 4781, 4791
출판	5811 ~ 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911 ~ 5912, 5920
부가통신	6121 ~ 6129
정보서비스	6311 ~ 6399
광고	7131 ~ 713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7211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9011 ~ 9019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신청분야별 연구개발활동 범위 예시

1) 산업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은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

2) 환경분야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3) 건설분야

-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4) 위생서비스(산업) 분야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하수 및 산업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 활동과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함에 있어 효율적인 원천 기술이나 시

스팀을 개발하는 활동

-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유기성 폐기물, 병원폐기물 등의 유해(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을 고도화하는 기술 개발 등

5) 출판 분야

- 수준 높은 지식문화사회로의 진입 및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출판지식과 콘텐츠를 생산 및 향유하는 것으로서 서적, 사전류,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등 기타 인쇄물 출판업 공정의 효율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IT중심의 사회 및 산업에 적절한 대응을 지향함
 - 출판관련 법, 재정, 기술, 예술적인 사항 및 판매에 관한 연구도 포함됨

6) 소매 분야

- 대형소매업 또는 인터넷판매업의 R&D 활동은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행동·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개발 및 평가활동을 포함

〈소매업의 연구개발활동 사례〉



7)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분야

- 컴퓨터용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거나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하는 임베디드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SW와 서비스 결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SW와 제조업 결합을 통한 전통산업 부가가치 제고, 융합SW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 원천기술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분야 연구개발활동 사례〉

연구개발활동	비연구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컴퓨터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개발 • 인터넷 기술의 개발 •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혹은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 특화된 컴퓨터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사업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개발 • 기존시스템 지원 • 컴퓨터언어의 변환, 또는 번역 • 응용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 시스템 결합 수정(debugging) • 기존소프트웨어의 번안 •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8)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분야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관련 모든 단계와 관련된 필름가공, 편집, 더빙, 필름 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또는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영화 및 오디오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함

9) 부가통신 분야

- (유선통신업 및 무선통신업)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을 이용한 지식의 보유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무선통신설비 또는 위

성통신시설을 통해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정보와 같은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의 전달 및 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업 및 위성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부호, 문헌, 음향, 영상 또는 기타정보의 송수신 및 전달목적을 가진 연구개발 활동

10) 정보서비스 분야

-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11) 광고 분야

- 지식을 영상화 및 시각화하여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기업/단체의 이미지 증진 등의 목적을 매체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및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첨단 제품 및 기술의 개발 등

12)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 (시장 및 여론조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외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조사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음
 - 조사에 있어 원고를 활용하는 전화 인터뷰 시스템에서 컴퓨터 기반의 인터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진행상황 및 중간 결과를 보고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시스템화 적용
- (컨설팅) 기업의 진단과 컨설팅을 위한 새로운 기법개발이나 모델구축
 - 사회 및 경제 트렌드에 대한 분석, 컨설팅 포트폴리오와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선택과 통제,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뢰되는 사안에 대한 효율적 대비 체계를 확립

1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분야

- 건축물·플랜트·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새로운 재료, 구조, 환경, 지반, 공법의 개발 또는 기존 설계작업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
-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활동 및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

식을 통한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함에 있어 그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함

- 설계, 시공, 영업, 감리는 연구개발활동과 구분되며, 공사입찰 시의 기술지원, 사업수주 등을 위한 환경, 해당영역 등의 분석 업무, 기존 사업에 대한 단순 지원활동, 공사후 하자 관련 보수행위는 제외됨

14) 기타공학 관련 서비스 분야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화학공학, 해양공학, 항공공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핵공학, 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산업 및 시스템 공학연구 또는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

- 조enje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검사 및 평가시스템 개발 등은 포함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화학적, 물리적 방법 또는 X선, 감마선, 초음파 및 기타 방법으로 방사능 및 오염측정, 식품 및 종자시험검사, 각종 물질 및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및 시험, 제품증명, 재료평가 등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을 수행하는 활동

- 물리시험 및 분석, 종합 기술적 검사, 기술검사 및 분석·성분, 순도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포함되나 생산물 품질관리검사, 계량 및 감정, 의료 및 치과 병리실험은 포함되지 않음

○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지질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상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화한 후 지리조사, 보완측량 및 편집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등

-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부문은 포함되나 지도제작 과정 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 또는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15) 기타 사업서비스 분야

○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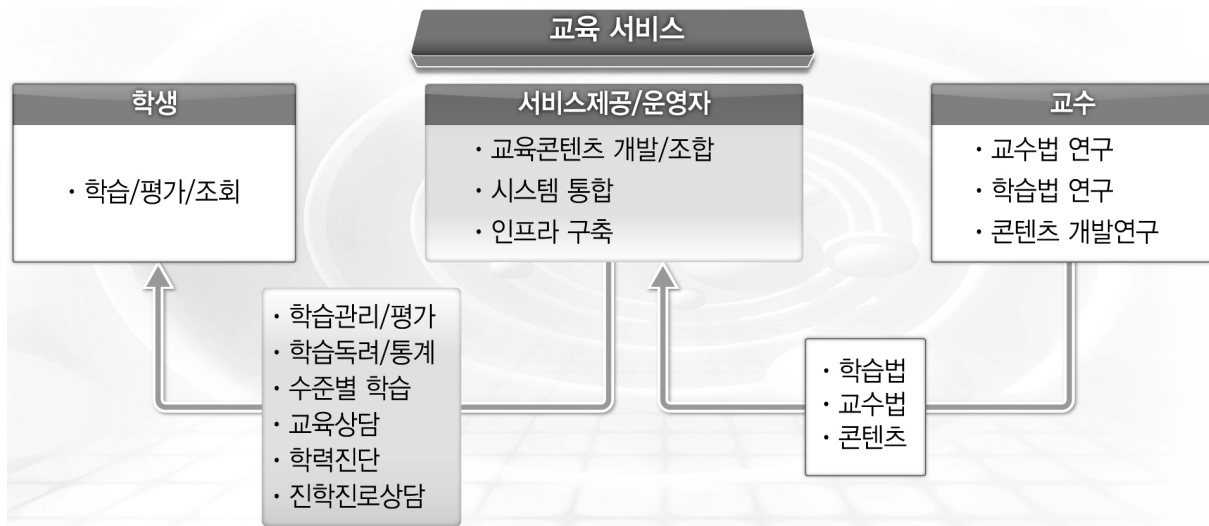
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 디자인 수행방법론 개발, 인간 감성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 패션을 활용한 서비스, 매장 관리를 위한 연구, 쇼핑 고객 (쇼핑시 동선 및 시선에 대한 연구), CCTV를 활용한 빌딩 관리 서비스 개발,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광객용 위치기반 관광안내 서비스

16) 교육서비스 분야

- 교육서비스란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의 기본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달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활동을 주로 포함

〈교육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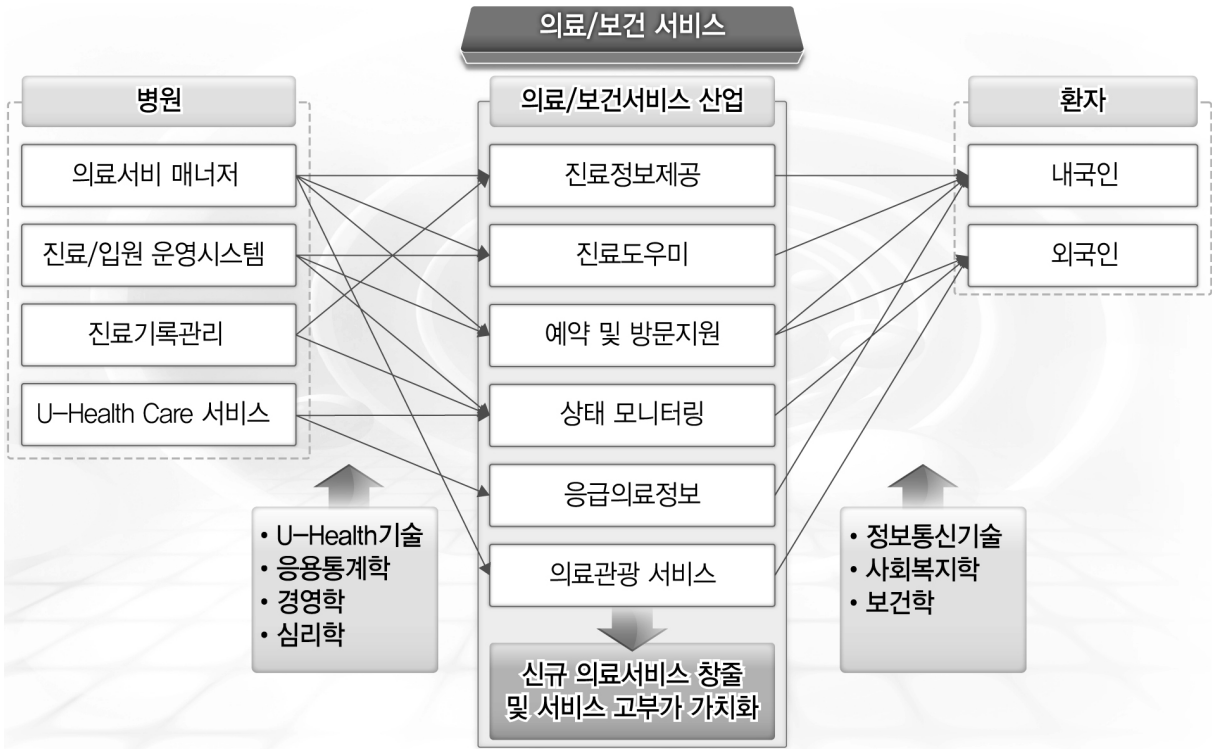
- 교육서비스는 학생의 학습·평가·조회 활동과, 교수의 교수법, 학습법, 콘텐츠 연구개발 활동의 연결부에서 콘텐츠의 개발·조합, 시스템 통합,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수행
 - 적절한 학습법, 교수법 및 콘텐츠를 제공 받아 이를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관리·평가·통계·진단, 수준별 학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이 존재
 - 이러닝 관련 기술을 포함한 교육학, 교육공학 및 교육·아동 심리학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이 진행 가능

17)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은 병원과 환자 양측이 의료행위를 주고받는 관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음

- (병원) 예약/진료/수술/입원 단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의료진/시스템/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 가설 설정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
- (진료 후 관리서비스)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병원에 제공

〈의료/보건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 사례〉



18)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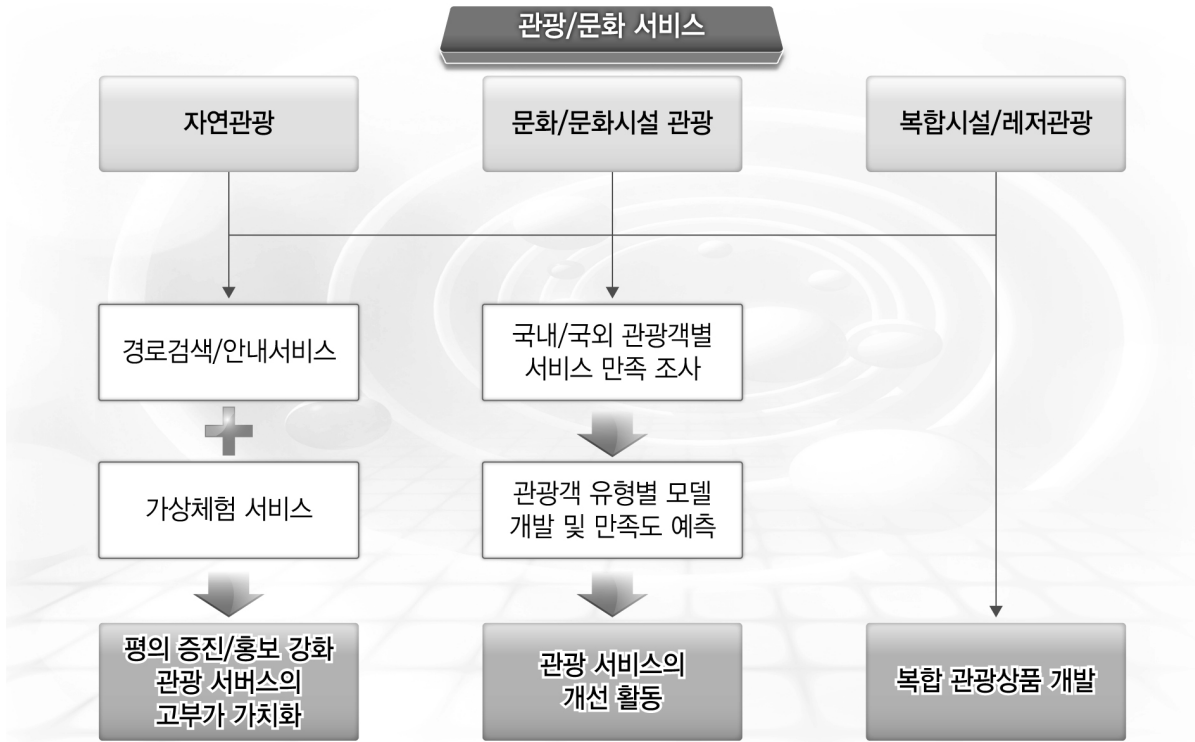
- 문화예술 부문에서 문화예술산업의 첨단화기술개발과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지향하며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운영과 연관되거나 예술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연단체 및 자영예술가의 예술적 지식 향유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 직접 공연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연구개발도 포함되나,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수행되거나 불건전성, 사행성 등 논란소지가 우려되는 업종 및 영화상영관은 제외됨

19)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 관광은 자연관광, 문화재나 전시관을 포함하는 문화·문화시설관광, 테마파크, 도시 및 레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레저관광 등으로 구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서비스 개선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핵심 R&D 분야에 해당 -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관광 안내 서비스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서비스 등 IT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서비스의 수요 예측 연구 등

〈관광/문화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 사례〉



» Q&A

1.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기업연구소는 기업의 이익 및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직전 단계까지의 연구개발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 목적으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연구소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소와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연구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준수사항

- 신고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신고 기업은 연구활동 전담자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별도로 상시 보유해야 함
- 연구소는 동일 소재지에 연구시설 및 연구소 직원이 위치해 있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 부소재지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음(연구소 직원 수 합산은 가능하나, 주·부소재지 모두 독립공간이어야 함)
- 주소지가 다르거나,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연구전담요원 등의 겸직 금지 의무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시행령 제17조제1항).

❖ 연구활동 외 종사자 상시 보유 의무

-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

❖ 소재지에 대한 준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연구소의 주소지가 1개 이상의 지역일 경우 설치 방법〉

- 각 주소지의 연구소가 모두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2개 방안 중 선택
 - 각 주소지의 연구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아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 2개 소재지를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하여 1개의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2개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함
- 각 주소지가 독립공간과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연구전담요원이 인정요건에 부족한 경우
 - 2개 주소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통합하여 연구소 인정요건을 갖추 수 있을 경우에는 2개 소재지를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 (2개 주소지까지만 통합가능)
 - 2개 주소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통합하여도 연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따라 주소지를 2개를 통합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주소지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함
- 연구전담요원 근무지와 다른 별도의 장소에 실험실 등 독립된 공간에 연구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2개 소재지(주소재지, 부소재지)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때, 주소재지는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며, 실험실이 있는 장소에도 최소한 연구소 직원(연구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1인 이상이 상주하고 있어야 함

❖ 1개 소재지에서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 인정받는 경우

- 전문연구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체계에서 중분류 첫째 2자리 수가 다른 경우임
- 각 전문연구분야가 모두 연구소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2개 방안 중 선택
 - 각 전문연구분야를 독립적인 연구소로 인정받아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연구소를 보유하거나
 - 각 연구개발활동 분야를 통합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각 전문연구분야가 독립공간과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연구전담요원이 부족한 경우
 - 각 연구개발활동 분야를 통합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건축물에 대한 제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시행령 제17조제4항).

» Q&A

1. 연구소 공간이 한 곳에 위치하지 않고 인접한 두 곳에 소재한 경우 신청 방법은

☞ 이러한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 연구소에 주소재지와 주소재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원요건은 주·부 소재지를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물적요건은 각각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각각의 소재지에 대해 연구소 설립신고 기준 요건을 갖추고 소재지별로 각각의 연구소를 따로 설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원요건은 합산할 수 없으며,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각각 충족시켜야 합니다.

2. 연구소를 주·부 소재지로 나누어 등록할 경우 각각의 소재지에 연구소 인적기준과 물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 주·부 소재지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의 공간에 대해 물적 기준인 연구시설은 따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합산해서 연구소 인정요건이 충족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재지 내 2개 이상의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요건

1. 연구전담요원 수

- 기업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교원·연구원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구 분		신 고 요 건	
인 적 요 건	연구소	벤처, 연구원·교원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벤처기업 및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임
-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임

-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부록4 참조)으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임
-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유효기간내여야 함
-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 이어야 하며,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임
- 국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구분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함

▶▶Q&A

1. 연구원 창업기업 입증서류 서류는 무엇인지

-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민법상의 비영리 연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중견기업은 모두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되는지

-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해당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기업확인서와 매출액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 자격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산업디자인,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전담부서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분야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지식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지식서비스 분야에 한정)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2대 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야간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 시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청년인턴제 등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영역이 명확한 감사
 - 기술자문위원,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인문·사회계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
 - 사범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이 속하는 계열별 구분에 따름
 - 예) 영어교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자로 간주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계열 구분 기준〉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가능(3년제 졸업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관련 법령	법령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40조1항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기업부설연구소 등 근무경력 1년이상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가능

❖ 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는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의 순서로 등급이 구분됨

- 기사 이상은 학사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 연구전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가능

❖ 외국인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연구업무가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전담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이 됨

- 연구전담요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주재(D-7), 기업투자(D-8),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이 있음
 - 외국인등록증은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며, 외국인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되어있음
-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생산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기업규모 변경에 따른 전담요원 자격 유지

-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기업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계속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Q&A

1. 연구전담요원 전공이 연구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자연계 전공자이어야 하고 연구소의 연구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공자 이어야 합니다. 비관련 전공자라고 판단될 때는, 연구경력, 연구소내에서의 역할 등 해당 연구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대학 4학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소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3.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중인 사람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한지

☞ 주간대학원에서 수학중인 경우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 수업이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중인 사람은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4.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부에서는 이공계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인문계과정을 이수한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요?

☞ 이공계 학사과정을 졸업하였으므로 전담요원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은 석사졸업이 아닌 학사졸업으로 등록됩니다. 반대로 인문계학사, 이공계 석사인 경우에는 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하며, 석사졸업의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기능장은 전담요원이 가능한지

☞ 기능장, 기술사는 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증별로 높은 순서가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의 순서입니다.

6. 고졸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갖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을 경우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합니다.

7. 계약직 사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지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하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또는 산업기사 자격)와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으로 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동일회사 연구경력도 가능한지

☞ 동일회사의 연구경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후에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9. 중소기업의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하여 산업학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 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이 되려면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연구전담요원중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의 과정이수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되는지

☞ 정규학점을 이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이수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는 전문대 졸업생과 같이 인정합니다. 정규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수료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입대예정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12. 회사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소 인력이 해외로 연수를 가거나 해외 사업으로 인해 파견을 가게 될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한지

☞ 6개월 이상 해외 연수나 파견의 경우에는 연구소 전담요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인원으로 근무 할 수 없고, 이때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연구소 인력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3. 연구전담요원 자격의 예외적용(지식서비스 산업분야 등)

- 산업디자인,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소 및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이러한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업종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에는 사업개요서 및 기자재,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분야가 산업디자인분야 중 제품, 포장디자인 분야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기업의 주업종이 영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해당되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계열이 연구개발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자연계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이 됨
 -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중소기업의 주업종 판단기준〉

-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의 업태구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최종판단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확인시스템 활용

❖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함
 -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자연계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의미는, 예체능계에 속하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연구전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이 확인되어야 함(전공이 국문학과, 정보학과 등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경력에 대한 입증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디자인 인정범위는 산업디자인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를 준용함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 산업디자인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정의〉

종류	정의
제품디자인	대량 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
시각디자인	주로 평면적인 시각 정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인쇄물, 영화, TV등 시각 매체를 통해 전달
환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건축물디자인, 조경디자인 포함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디지털기술기반의 매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미디어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요건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학사의 경우 IT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IT분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관계없는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계 또는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1급을 가진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계 또는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2급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Q&A

1.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이 디자인분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 ☞ 신고하는 기업의 주생산품과 연구사업개요서에 의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배경, 주요기능, 연구분야, 연구과제 등과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기업의 주생산품으로 디자인분야 연구소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기타 연구소직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인력은 아니며, 자격조건은 없으나, 연구전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여야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지정하여 신고하는데,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전임, 겸임을 구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타기관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으며,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제품제작, 시험 등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생산 활동을 겸직하는 직원은 연구보조원이 아님

❖ 연구관리직원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연구행정 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으며,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관리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 회사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연구관리직원이 아님

❖ 연구소장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이 연구개발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할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고
 -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관리 직원에 포함하고 있음
-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연구전담요원 중 최선임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함
 - 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수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연구소장 겸임을 인정하고 있음

»Q&A

1.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안되는 분이 연구소장으로 등록된 분이 전임일 경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연구관리직원에 포함 시킵니다.
2.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는지
 - ☞ 연구소장의 경우 회사 내부 종업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다른 회사의 임직원(계열사포함)을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연구소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타회사의 임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귀사의 임직원이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대학교수를 연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서로 겸직할 수 있다.)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학교수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연구소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을 연구소장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적에 관계없이 연구소장이 가능한지
 - ☞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연구소장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6.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 외에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 연구전담요원 만 있어도 가능하며,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 직원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과 동일하게 연구소 안에서 근무하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7. 연구소장의 전임, 겸임 기준은 무엇인지

- ☞ 연구소장은 전임 또는 겸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전임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4. 물적요건

1. 연구공간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이하인 소규모 연구소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공간의 설치 기준

- 연구소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 연구소의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소가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바닥에서 최소 2m이상의 높이 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별한 경우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기업 기업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및 정보처리분야 전담부서(전용 면적 30㎡이하)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공간의 면적 확보 기준

-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연구전담 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거나, 뚜렷한 사유가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이 완전 오픈된 공간을 말함

❖ 연구소 현판 부착 의무

- 연구소용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가 독립건물 일 경우 건물 입구, 1층을 전체를 쓸 경우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층의 출입구,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 회사 출입구나 건물 안내판에 연구소 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도 독립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연구소는 반드시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함
-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함

❖ 연구소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인 경우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 베란다의 임의 용도전용, 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 조립식 건물, 가건물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

▶▶Q&A

1.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가능한지
 - ☞ 연구용 기자재는 연구소로 등록된 독립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가 협소할 경우 별도의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실험실만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실험실뿐만 아니라 연구원 사무공간도 독립공간을 확보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무공간을 타 업무부서와 같이 사용한다면 인정 불가합니다.

3. 연구소 사무실과 실험실로 연구소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연구소로 등록할 공간이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각 면적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물적 기준에 따라 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으며, 주거(주택)용은 기업연구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연구소 설립신고 이후 연구사업 활성화로 연구소 인력이 상당수 총원이 되어 연구 공간 면적에 비해 연구소 인력이 무리하게 많은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 활동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한 후 면적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간을 확장하거나 기존의 장소와 다른 소재지에 독립된 공간(최대 2개소까지만 가능)을 확보 할 수도 있습니다.

6. 전대차계약을 한 공간에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할 수 있는지

☞ 명확하게 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7. 연구소 공간이 벽체로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 연구소가 독립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출입문이 있어야 독립 공간으로 물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 기업연구소등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등인 경우 30m² 이하의 경우는 타부서와의 구분을 위한 파티션으로도 가능합니다.

8. 건축물대장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가압류, 근저당 등의 설정이 되어 있어도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9. 건물내 복층공간에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연구소용으로 사용할 공간이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나지 않은 복층(상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를 하고 전용이어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연구소 안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고,
 -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제조, 생산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자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기자재 및 보유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신고한 연구사업개요서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인용 PC, 사무책상, 팩스, 복사기, 모니터 등 사무집기와 서버, 허브 등과 같이 통신 수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용 PC가 아닌 고성능이나 특수용 PC 및 개발용 프로그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됨
- 범용으로 사용되는 보급용 측정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하지 않음
 -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정장비

❖ 부대시설

-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소 전용으로 제작한 구축물은 부대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
 - 파일롯트 설비, 시험로, 주행시험장, 시험용 폐수처리장 등
- 연구소 직원만 활용하는 기업연구소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 직

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Q&A

1.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기자재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 S/W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 S/W(MS오피스, 한글 등)는 연구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분야가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목적용으로 고가의 PC나 S/W(캐드, 일러스트 등)로 연구소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이 됩니다.

3. 저희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연구소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공간도 연구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 ☞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시공간은 연구소 부대시설로서 연구소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회사의 일반 상품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연구소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연구소 면적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Ⅲ 신규설립 신고

-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 신고 및 수리

1.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1. 제출서류

- 연구소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조직도, 도면 및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소, 벤처확인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등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제출서류

- 연구소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서식과 구비서류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정서식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에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에서 4가지 서류작성 → 구비서류 첨부
 - * 법인 또는 기업용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및 연구소신고관리 전용 공인인증서 가능
 - 구비서류인 조직도(회사 및 연구소),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연구소 관련 사진은 별도로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JPG, TIF, BMP 등)로 첨부하여야 함.
 - * 한글, 워드, 엑셀 등으로 작성한 문서는 저장시 이미지 저장을 선택하면 이미지 생성가능
- 연구소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해당서류 제출

❖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 중견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기업확인서 및 매출액증빙자료(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본) 등 매출액증빙자료
-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보험가입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

〈설립신고 서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정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연구시설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연구시설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⑦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회사 조직도 ⑦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도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구비서류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교원·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중견기업에 한함)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중견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Q&A

1. 회사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자 하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세, 관세 혜택 및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시 가점, 전문연구요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 연구소 설립신고 업무를 산기협 외 타기관에서도 진행하는지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만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지정서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0>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재무 현황(년)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⑧ 종업원 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	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
⑪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⑫ 연구소명			⑬ 설립 연월일	
⑭ 연구소장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근무 형태 []전임 []겸임	
⑮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⑯ 신청분야	[] 지식기반서비스		[] 제품개발	
부설 연구소	⑰ 연구분야	[] 위생서비스(산업) [] 소매 [] 출판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 부가통신 [] 정보서비스 [] 광고 []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 기타 사업서비스 [] 교육기관(산업) [] 의료 및 보건(산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 문화서비스(기타)		
	⑱ 주 연구 내용			
⑲ 연구개발 인력	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직원 명	
⑳ 건물 형태	[] 건물 전체 [] 소유 [] 임대		대지 m ² , 건물 m ²	
	[] 독립공간	[] 소유 [] 임대	m ²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㉑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 운영비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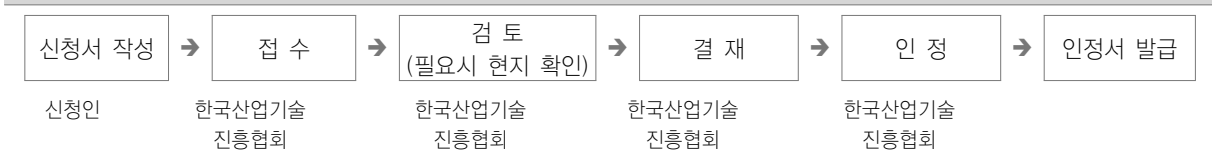
(뒤쪽)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1부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1부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한다) 12.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수수료 없음
----------	--	-----------

신고서 작성방법

-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정설계 등).
-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 ◇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 ⑮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⑯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되, ③의 “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기업은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 ⑰의 “연구 분야”란은 ⑯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 다만, ⑯에서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 ◇ ⑱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 ⑲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 ⑳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 ㉑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소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대지면적과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대학교원 등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전용 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 ◇ ㉒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연구소의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고서류 처리 절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전문 분야

④ 신고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 (3가지 정도)	연 도	년도	년도	년도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방법

- ◇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고기업의 해당 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 ◇ ②의 “관장할 기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③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 ◇ ④의 “신고일부터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고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구시설 현황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모델명	④ 단가 (백만원)	⑤ 수량	⑥ 제작회사 (국명)	⑦ 설치 장소	⑧ 도입일	⑨ 사용 구분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인)

연구시설 현황 작성방법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기입하되, 구입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기입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의 통신수단 및 한글 등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툴로 사용되는 전용프로그램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 ①의 “일련번호”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1, 2, 3, 4 ... 를 의미합니다).
- ◇ ⑦의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세부 부서가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 ⑨의 “사용 구분”란에는 연구기자재를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을,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을 적습니다.

※[연구시설 현황]의 작성 장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개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⑤ 구분	⑥ 일련 번호	⑦ 직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소속 부서	⑪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⑫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⑬ 병적 사항	⑭ 발령일	⑮ 신규 편입 여부
⑯ 연구소장										[] 전임 [] 겸임
⑰ 연구 전담 요원										
⑱ 연구 보조원										
⑲ 연구 관리 직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뒤쪽)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 ◇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학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또는 3년(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연구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소속 업체	근무부서	담당 업무	직 급	비 고
~					

- ◇ ⑦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 ◇ ⑩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 ⑪의 “최종 학교” 및 ⑫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⑬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 ◇ ⑭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 ◇ ⑮의 “신규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⑯의 “연구소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⑱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 ⑲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업무 외에 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30>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재무 현황(년)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⑧ 종업원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	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	
⑪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 개발 전담 부서	⑫ 전담부서명		⑬ 설립 연월일	
	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연구 분야	[] 건설엔지니어링 [] 금속 [] 기계 [] 산업디자인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정보처리 [] 화학 [] 환경 [] 기타		
	⑯ 주 연구 내용			
	⑰ 연구개발인력	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직원 명
		⑱ 연구시설기자재 종		
⑲ 건물 형태	[] 건물 전체	[] 소유 [] 임대	대지 m ² , 건물 m ²	
	[] 독립공간	[] 소유 [] 임대	m ²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m ²	
⑳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 운영비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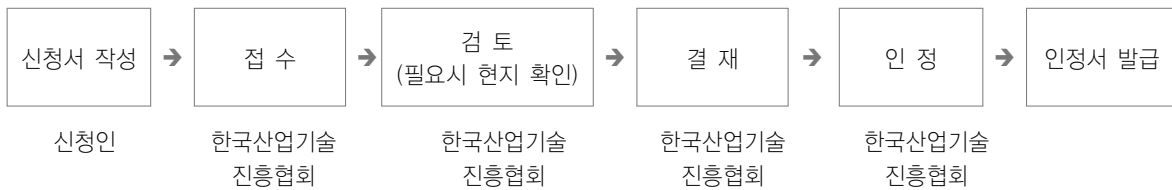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조직도 1부 6.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	---	-----------

신고서 작성방법

-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 ◇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 ⑭의 “소재지”란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⑮의 “연구 분야”란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은 ⑯의 “주 연구 내용”에 적습니다.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정보처리를 선택합니다.
- ◇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 ⑱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 ⑲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대지면적과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전용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 ◇ ⑳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연구개발전담부서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고서류 처리 절차



» Q&A

1. 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구소 공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 ☞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 건물로 처리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가 건물로 처리 합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상의 연구소명과 현판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연구소명과 현판명이 일치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3.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시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인 경우 특별한 서류작성 요령과 절차가 있는지
 - ☞ 공동대표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모든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서 상의 연구소 설립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재 하는지
 - ☞ 연구소 설립 신고는 先설립 後신고 체제로 연구소 설립일은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소가 설립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연구공간 면적 기재시 건물형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 ☞ 건물형태란의 “건물전체”는 건물전체가 연구소용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일부분만 연구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에는(소기업 또는 지식서비스분야연구소 및 정보처리분야 전담부서의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분리구역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첨부서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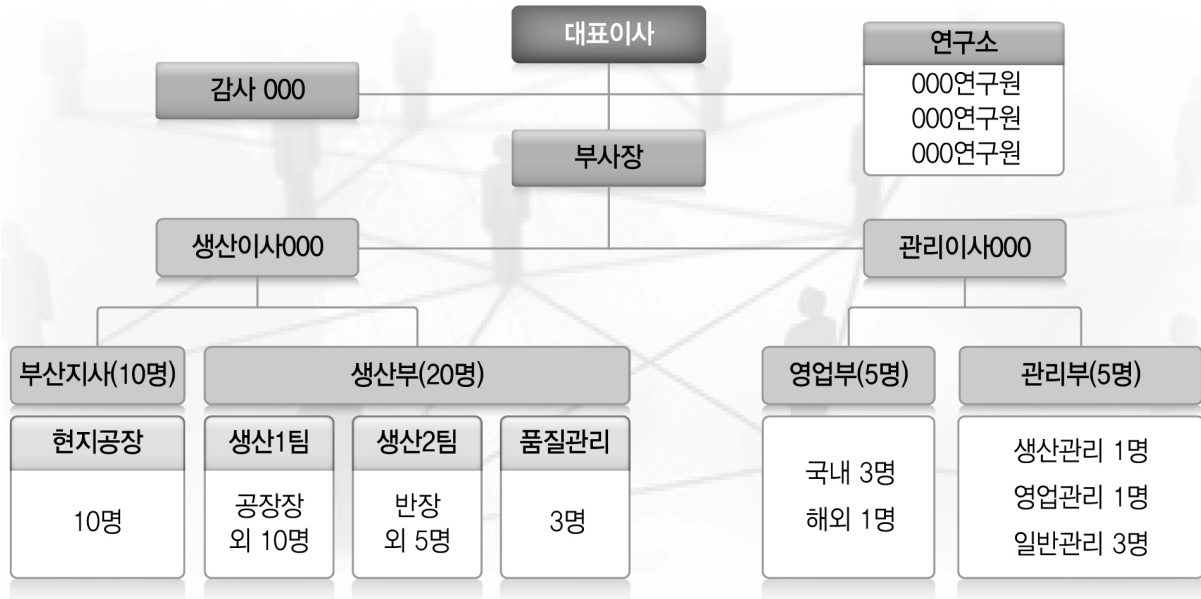
❖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 부서형태로 작성(연구소, 전담부서 포함)
-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4대보험 가입자)
단, 종업원수가 많을 경우(20인이상) 연구소를 제외한 부서는 부서별 종업원수만 기재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소속은 해당 인원의 이름을 전부기재
- ※ 상시 종업원의 일용직, 파견직 등 4대보험미가입자, 외주생산, 외주영업 등의 고용형태가 있는 경우 해당 특이사항을 조직도상에 표기

❖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작성 예시

1) 일반적인 경우(연구소 인원이 적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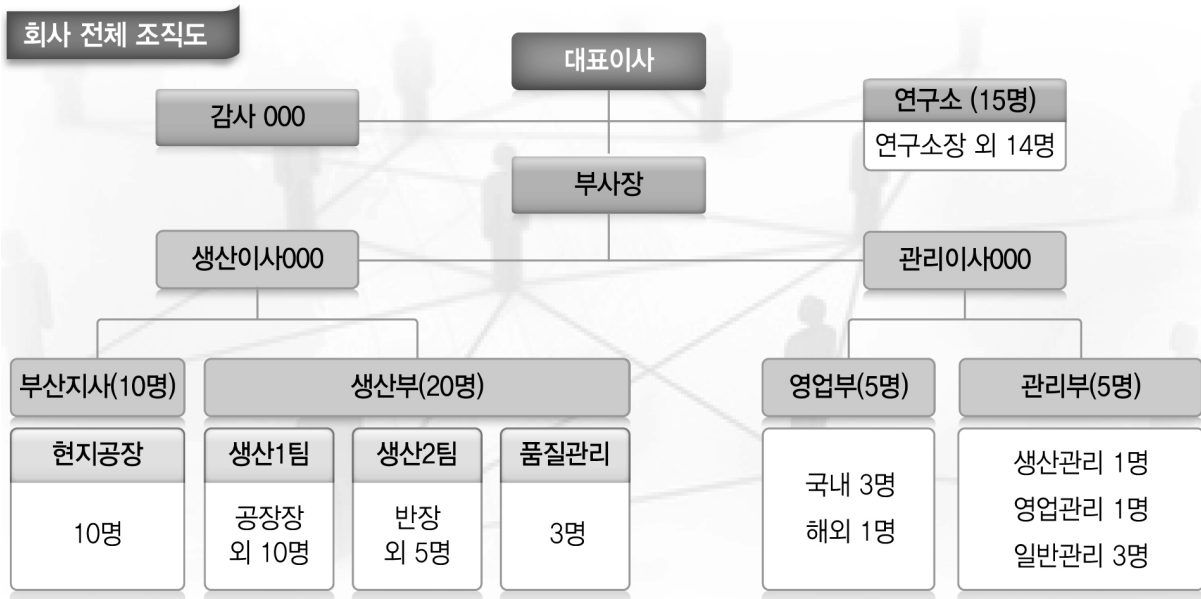
-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하고 연구소 조직도 내에는 연구원 이름을 기재



2) 연구원이 많은 경우

- 연구소 조직을 포함하여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부서내에는 인원수만 표시)
- 연구소 조직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조직도 내에 연구원 명을 기재

〈회사 전체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3) 외주생산, 일용직 등이 있는 경우



※ 생산 및 관리 등 업무를 외주로 할 경우 부서는 표기하고 외주용역을 기재, 외주용역계약서는 첨부파일의 기타란에 첨부하여 증빙

4) 서비스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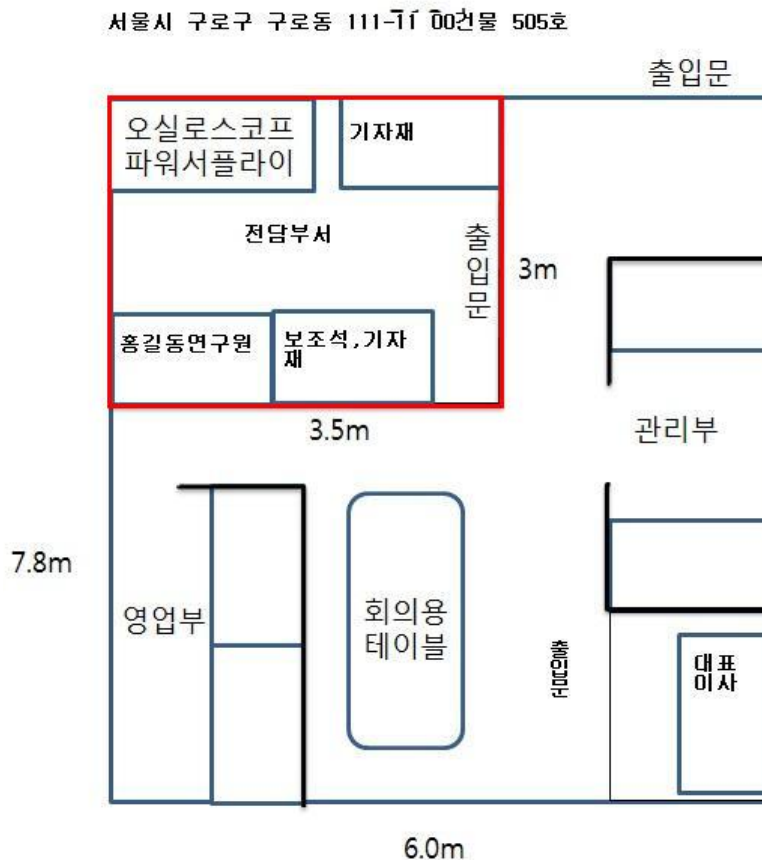
※ 잘못신청하는 예: 조직도상 사업부서가 없이 연구소만 있는 형태는 신청불가, 외주개발자들도 연구원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음

❖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도면(Lay-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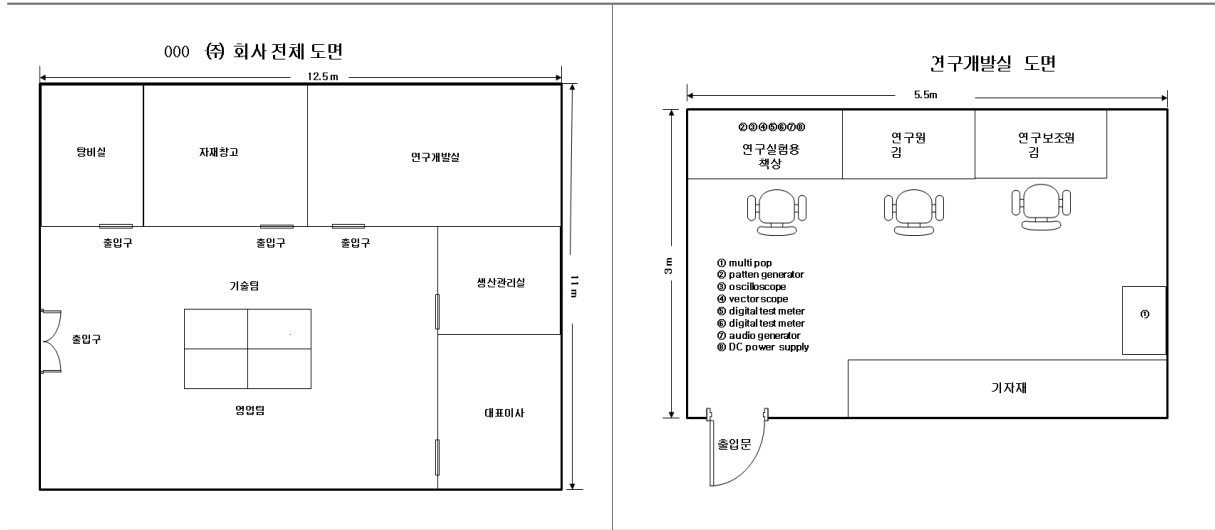
- 가급적 A4 크기로 작성하되, 천정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연구소 내부 구조를 그대로 그리되 공간구분(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비품창고 등) 표시, 연구원 자리 배치에 이름 기재 및 주요기자재 위치를 명기
- 도면상에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m단위로 반드시 표기, 면적계산식 기재
 - ※ 유의사항 : 도면상의 계산면적과 “신고서”상의 연구소 면적이 일치하여야 함
- 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의 해당 층에 회사전체 또는 연구소외 다른 부서가 있다면 층의 전체 내부 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 공간 해당부분 구분 표시 제출
- 연구사무실과 실험실이 별도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면 각각의 내부도면을 작성
- 연구소가 여러 층에 있을 경우 각 층의 내부도면을 각각 작성

❖ 내부도면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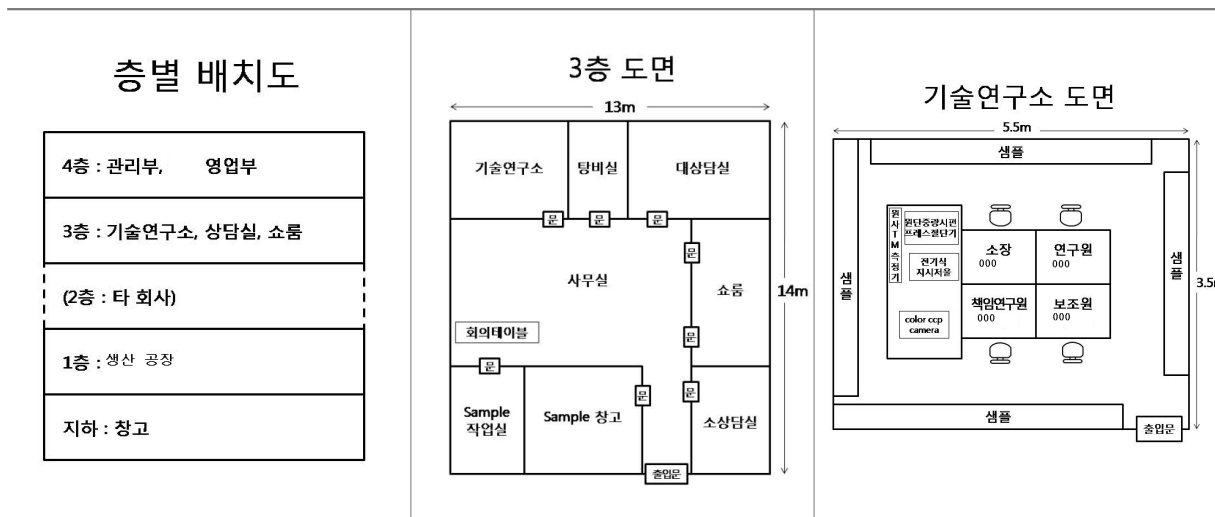
1) 회사전체가 면적이 작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2) 한 개 층 일부를 사용하는 사용(연구소 면적에 색깔 또는 굵은선 표시)



3) 여러층 중 하나의 층인 경우(연구소 면적에 색깔 또는 굵은선 표시)



4) 아파트형 공장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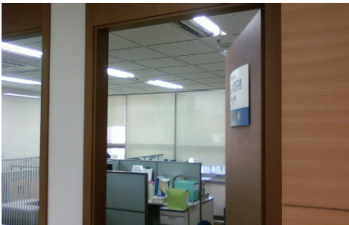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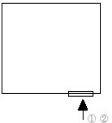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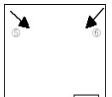
5) 자체 공장내 있는 경우

<p>공장전체</p>	<p>(전체도면)</p> <p>경기도 화성시 00읍 00번지</p>
<p>해당동</p>	<p>(사무동도면)</p> <p>경기도 화성시 00읍 00번지 (1층)</p>
<p>해당연구소</p>	<p>(디자인연구소 내부도면)</p> <p>경기도 화성시 00읍 00번지 (1층)</p>

❖ 연구소, 전담부서 관련사진 첨부 방법

- 현판(근접)사진1장, 출입문(현판포함) 사진1장, 연구소/전담부서의 내부사진4장
- 연구소, 전담부서의 독립공간 확보 및 내부 현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좌우의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를 촬영
- 연구소가 2실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각 실의 사진 제출
- 연구소가 독립건물인 경우 외부 전경사진과 각층 각 실의 사진 제출
- 아래 형태대로 사진을 촬영, 파일첨부시는 사진파일을 그대로 첨부(설명기재를 하지 않음)

〈사진촬영 예시〉

현판 및 출입문 사진	내부사진 1	내부사진 2
<p>①번 사진</p>  <p>②번 사진</p>  <p>최상표 방향으로도 사진 촬영</p> 	<p>③번 사진</p>  <p>④번 사진</p>  <p>최상표 방향으로도 사진 촬영</p> 	<p>⑤번 사진</p>  <p>⑥번 사진</p>  <p>최상표 방향으로도 사진 촬영</p> 

〈주의사항〉

- 연구소, 전담부서 현판(현판은 전용출입구 근처에 부착하고, 출입문이 보이도록 촬영)
- 연구소, 전담부서 출입구(연구소, 전담부서 출입문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연구소, 전담부서 내부사진(연구소 내부도면상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좌우의 연구소 내부를 촬영)

▶▶ Q&A

1.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은 가급적 A4 크기로 작성하되, 연구소가 있는 해당층의 전체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 부분을 블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내부도면을 확대하여 책상배치, 연구원 자리 배치, 이름기재 및 주요기자재 위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공간 면적확인을 위해 도면상에 가로 및 세로의 치수를 미터단위로 표기하고, 사무실과 실험실이 별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내부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고 몇 장을 첨부하는지

☞ 사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소 현판1장(연구소 현판은 연구소 전용출입구 근처에서 부착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보이도록 촬영)
2. 연구소 출입구1장(연구소 출입문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3. 연구소 내부사진4장(연구소 내부도면상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 좌우의 연구소 내부를 촬영)

** 연구소가 2실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각실에 대한 사진 촬영

3.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 회사의 모든 부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각 부서명을 기입하고, 해당 부서별 직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때 연구소도 회사의 한 부서이므로 회사조직도에는 연구소도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유지 관리비 내역서 및 보험가입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rnd.or.kr)의 제출서류 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있는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고 및 수리

- 연구소 등의 설립 및 변경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됨(신청서 보완, 문서이송,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 시에는 정해진 기간(신고, 변경 모두 7일)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반려 처리됨
- 제출된 서류확인을 통해 연구소 설립에 이상이 없으면, 인정서를 교부함
- 인정서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처리기간

- 연구소 등의 설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임
 - 신청서의 보완 등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 핸드폰으로 접수되었음 확인하는 문자 송신
 - 통상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요청 또는 인정처리
- 제출된 설립, 변경신고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내용이 반려됨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 핸드폰으로 서류보완 사실 문자 송신

❖ 자료보완

- 제출한 신고서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서류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할 수 있음
 - ※ 보완요청을 받고 7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접수가 반려되며, 이 경우는 관련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주요 보완요청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연구사업개요서는 신청기업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연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소 직원의 최종학교, 정확한 학과 명칭 및 학위번호가 기재가 잘못된 경우
 - 도면 및 사진을 통해서 독립공간 여부 및 연구원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면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진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회사의 규모, 연구분야, 연구내용을 감안할 때 연구소 직원이나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 인정서 교부

-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신고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가능
 - 신고서 서류의 보완사항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인정서가 발급되오나, 긴급히 처리할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상담을 통해 긴급처리될 수도 있음
-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는 인정서가 발급되며, 별도의 증명서 등은 발급되지 않음
 - 연구소 등을 인정받은 사실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인정서 사본을 제출하면 됨.
- 연구소, 전담부서의 인정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나 재발급이 가능
 - 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직접 출력(<http://www.rnd.or.kr> “인정서출력하기“)
 - 회사명, 연구소명, 연구소 주소, 제한조건 등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A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변경 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 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참조>
그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별도의 접수증이 교부되는지
 - ☞ 별도의 접수증은 교부되지 않으며, 온라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리기간 동안에 신고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지
 - ☞ 신고된 서류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서식인쇄를 통해 출력가능하며, 단 출력물 상단에 처리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후 관련서식을 인쇄할 경우에는 출력물 상단에 처리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연구소 설립/변경 신고 접수 후,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한지
 - ☞ 온라인상에 서류를 접수 완료 한 이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단, 접수 후 분회 해당부서(연구소인정팀)에 연락하시면 수정 또는 추가 가능토록 보완조치해 드립니다.
5.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접수 후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 ☞ 분회에 해당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접수 철회 가능하며, 추후 설립신고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변경신고 접수 후 신고한 서류를 철회할 수 있는지

☞ 변경신고 접수 후 서류 검토 중 기업 사정에 의해 변경내역이 없어진 경우 변경신고 반려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7. 설립신고 서류는 며칠 안에 보완해야 하는지

☞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설립신고 서류가 반려처리 됩니다.

8. 인정서는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 설립 및 변경신고가 처리된 후 인정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

9.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는 어떠한 경우 재교부 받게 되는지요?

☞ 기업 및 연구소 명칭변경, 연구소 소재지 변경 등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처리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

10.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지

☞ 재교부 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IV 사후관리

1. 변경신고
2. 실적보고 의무
3. 사후관리 및 현지확인
4. 인정취소

1. 변경신고

- 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주된 변경신고사항은 기업체 변경사항(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등)과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사항(연구소명,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면적 등)이 발생한 경우임
-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이전된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함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구 분	변경신고사항
기업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명칭(상호)
	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법정기업유형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연구분야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소재지 및 면적
	연구용 기자재
기업합병·양수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 변경신고 유의 사항

-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감면을 추징 받을 수 있음

- 기업유형이 상위 기업유형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을 충원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창업 3년이 경과된 소기업의 경우는 2명에서 3명으로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이 변경됨
 -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벤처인증 우대(연구전담요원 수 2명)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기업(연구전담요원 수 3명) 또는 중기업(연구전담요원 수 5명)에 해당하는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연구전담요원 수가 7명에서 10명으로 상향 조정됨
- 기업간 합병 또는 양수도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수를 하는 기업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신고 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http://www.rnd.or.kr>)에 접속하여 신고
 - 홈페이지 메뉴 ‘변경신고안내→변경신고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번호(본점)와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또는 산기협용)로 로그인
 - *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사전준비
- 시스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작성
 - ‘로그인→ 변경사항 체크→ 변경사항 입력→ 저장→ 제출하기’ 순으로 변경신고 진행
 -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 체크시 반드시 변경내용만 체크,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을 체크할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신고 제출서류

구분	변경신고사항	제출서류	
		온라인 지정서식	첨부서류
기업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변경신고서	-
	명칭(상호)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업종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코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정기업유형		중소기업입증서류(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중견기업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구분	변경신고사항	제출서류	
		온라인 지정서식	첨부서류
연구소 · 전담부서	명칭	변경신고서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연구사업개요서	사업자등록증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소 직원현황	(필요시 첨부)
	소재지 및 면적	변경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전용도면) lay-out •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연구용 기자재	시설명세서	-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도신청공문(양수기업) •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 법인등기부등본(합병,분할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 양수도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 신규 설립시 구비 서류 일체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된 것)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 Q&A

1.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 연구소/전담부서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94호 제8조(변경신고)참조)

2. 저희 연구소는 일부 연구원이 퇴사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지금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일자 인정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관련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연구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 산기협 홈페이지를 통해 양수를 하는 기업이 양수도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청하시고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본점), 법인등기부등본, 양수도공문,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후 변경된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수한 회사기준으로 신규설립 신고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인정서에 있는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담요원이 2명인 벤처기업, 창업3년 이내인 소기업의 경우에 인정서에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온라인 변경신고를 통해 인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하며, 변경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연구소를 2개 운영중인데, 1개의 연구소를 취소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연구소 취소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유지하고 있는 연구소는 직원현황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경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7. 변경신고 접수 후 미처 변경되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추가 변경이 가능한지

☞ 온라인으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추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완을 통해 추가항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8. 연구원이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 연구원이 연구소내에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변경신고를 하여 연구원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2. 실적보고 의무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기업은 현지확인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이 없을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됨

❖ 실적보고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 연구소 등은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조사되는 내용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 연구개발통계로 활용
 -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월말까지 조사표 제출 안내공문 발송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Q&A

1.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www.koita.or.kr/research03/)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는 4월초에 시작되며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업에서 누가 작성하는지

- ☞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담당자가 작성하시되, 개발비 관련해서는 귀사의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시 어떻게 되는지

- ☞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올해 1월에 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정받았다면

올해 제출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5. 전년도 12월에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저희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는 12월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연구원의 인건비 지출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 저희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설립 및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하였습니다. 저희 기업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전담부서가 있었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매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활동조사표도 제출해야 하는지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및 현지확인

- 협회에서는 신고된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사후관리를 실시함
- 사후관리는 자료요청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후관리

- 연구소,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촉진, 인정요건 유지 및 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 휴·폐업 여부 확인
 - 중견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우대적용 경과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인정요건 확보여부 확인
 - 6개월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인정요건 및 연구활동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속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시 연구실적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여부 확인
 - 부실연구소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신고내역(신규/변경)에 대한 사실확인
- 연구소가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연구소 보유 기업은 사후관리 관련 문서 제출이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신고내용과의 변동여부 확인
 -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이 신고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 2대보험 가입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기안서, 결과보고서 등)

❖ 현지확인내용

- 인정 후에 연구개발활동 촉진 및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및 자문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의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연구공간의 적정성 판단
- 연구소 인정요건 확보 여부 및 연구활동 수행여부 종합 판단
- 기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상담

❖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조치

연구개발활동	인정요건 충족	신고내용 일치	조치내용
있음	충족	일치	이상 없음
	미달	공간 확보, 인력부족	조건부 취소(30일내 보완)
		인력확보, 공간 미달	조건부 취소(30일내 보완)
		인력, 공간 모두 미달	인정취소(자진, 직권, 허위)
없음	미달	불일치	인정취소(허위신고 처리)

» Q&A

1.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귀 협회의 공문을 수령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문의 요청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사항(연구원, 주소, 면적, 회사명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기한내에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구소(전담부서)가 운영되지 않거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취소공문과 인정서 원본을 본회에 제출하여 취소처리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추후조치가 진행되거나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소 현지확인은 언제 실시 하는지

☞ 연구소 인정시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 처리합니다. 다만 연구소 직원의 전담여부, 연구공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인정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3. 현지확인 일정은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지

☞ 일반적인 경우, 현지확인 1~2일 이전에 기업의 대표나 신고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어 목적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신고내용에 대한 허위가 의심되거나 부실연구소 등으로 신고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현지확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현지확인시 연구소 직원이 전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 반드시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연구소장, 신고관리담당자등 필요서류 및 사실확인에 직접적으로 담당자는 자리하셔야 합니다.

5. 현지확인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신고내역과 실제운영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고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연구소 직원, 소재지 등) 14일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의 이전 등으로 연구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없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취소되며, 이 경우 향후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직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인정취소

- 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나 자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이 취소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인정이 취소되고,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기업체·영리연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허위/부정 신고에 따른 제재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 그 밖의 경우로 취소된 경우는 상시 재 설립 신고가 가능함

»Q&A

1. 회사의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구소/전담부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본회에 접수·신고하면 됩니다.
2.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활동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담부서에 인원충원을 통해 연구소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전담부서를 연구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 취소신고와 연구소 설립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전담부서 취소신고에 따른 서류(취소사유가 기재된 기업공문과 전담부서 인정서 원본)와 연구소 신규설립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

우 처리절차는 연구소 신규설립 인정 후 전담부서를 취소하여 드리므로, 연구소 미승 인시에는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연구소 자진취소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요건이 충족되어 연구소를 설립신고하려는데 가능한지

☞ 기업에서 자진취소를 한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요건 충족시 언제든지 설립신고 가능합니다.

4. 연구소 현지실사 후 실제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 되었다하여 직권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연구소 설립신고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인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 직권 취소된 기업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고 불가합니다. 1년이 지난 기업은 연구소 인정요건 충족시 설립신고 가능합니다.

5. 변경신고를 2년 이상 하지 않아 협회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을 경우, 보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협회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V 부 록

1. 연구소 관계법령
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연혁
3. 지식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시행 및 확대
4. 중소기업의 범위
5. 보전산지 전용 추천
6. 연구소 주요지원제도

1. 연구소 관계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713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 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참여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5.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19조(사후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16호, 2013.12.24,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8

미래창조과학부(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8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미래창조과학부

-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7) 국립·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석사·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소방방재청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3.3.23, 2013.12.2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⑥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

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 ③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참여제한 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2년(국외로 누설·유출한 자는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2년
5. 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자: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자: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자: 2년 이내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3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1년
8.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5016호, 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매	4711, 4731, 4781, 4791
출판	5811 ~ 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911 ~ 5912, 5920
부가통신	6121 ~ 6129
정보서비스	6311 ~ 6399
광고	7131 ~ 713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7211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9011 ~ 9019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같은 의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을 위반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4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2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60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20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60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2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 2013.12.30,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2.30>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
- 2) 영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
 -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나)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

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3.12.30>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 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

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 ⑤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

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30>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5조(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0>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재무 현황(년)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⑧ 종업원 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		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			
⑪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⑫ 연구소명				⑬ 설립 연월일			
⑭ 연구소장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근무 형태 []전임 []겸임		
⑮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⑯ 신청분야	[] 지식기반서비스			[] 제품개발			
부설 연구소	⑰ 연구분야	[] 위생서비스(산업) [] 소매 [] 출판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 부가통신 [] 정보서비스 [] 광고 []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 기타 사업서비스 [] 교육기관(산업) [] 의료 및 보건(산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 문화서비스(기타)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⑱ 주 연구 내용					
⑲ 연구개발 인력	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직원 명	⑳ 연구시설기자재		종	
㉑ 건물 형태	[] 건물 전체	[] 소유 [] 임대	대지	㎡, 건물		㎡	
	[] 독립공간	[] 소유 [] 임대	㎡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	
㉒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 운영비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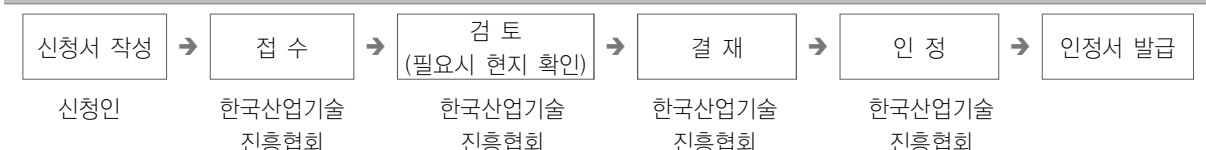
(뒤쪽)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1부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1부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한다) 12.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수수료 없음
------------------	--	-----------

신고서 작성방법

-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정설계 등).
-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 ◇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 ⑮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⑯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되, ③의 “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기업은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 ⑰의 “연구 분야”란은 ⑯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 다만, ⑯에서 “지식기반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 ◇ ⑱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 ⑲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 ⑳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 ㉑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소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대지면적과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대학교원 등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전용 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 ◇ ㉒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연구소의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고서류 처리 절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전문 분야

	연 도	년도	년도	년도
④ 신고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3가지 정도)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방법

- ◇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고기업의 해당 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 ◇ ②의 “관장할 기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③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 ◇ ④의 “신고일부터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고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구시설 현황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모델명	④ 단가 (백만원)	⑤ 수량	⑥ 제작회사 (국명)	⑦ 설치 장소	⑧ 도입일	⑨ 사용 구분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인)

연구시설 현황 작성방법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기입하되, 구입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기입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의 통신수단 및 한글 등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툴로 사용되는 전용프로그램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 ①의 “일련번호”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1, 2, 3, 4 ... 를 의미합니다).
- ◇ ⑦의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세부 부서가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 ⑨의 “사용 구분”란에는 연구기자재를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을,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을 적습니다.

※[연구시설 현황]의 작성 장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 현황
 [] 연구개발전담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개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⑤ 구분	⑥ 일련 번호	⑦ 직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소속 부서	⑪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⑫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⑬ 병적 사항	⑭ 발령일	⑮ 신규 편입 여부
⑯ 연구소장										[] 전임 [] 겸임
⑰ 연구 전담 요원										
⑱ 연구 보 조 원										
⑲ 연구 관 리 직 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뒤쪽)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 ◇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학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또는 3년(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하므로,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연구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소속 업체	근무부서	담당 업무	직 급	비 고
~					

- ◇ ⑦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 ◇ ⑩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 ⑪의 “최종 학교” 및 ⑫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⑬의 “병역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 ◇ ⑭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 ◇ ⑮의 “신규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⑯의 “연구소장”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⑱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 ⑲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업무 외에 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30>

제 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소재지:
3.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30>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재무 현황(년)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⑧ 종업원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		⑩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투자국 (%)		
⑪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 개발 전담 부서	⑫ 전담부서명		⑬ 설립 연월일			
	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연구 분야	[] 건설엔지니어링 [] 금속 [] 기계 [] 산업디자인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정보처리 [] 화학 [] 환경 [] 기타				
	⑯ 주 연구 내용					
	⑰ 연구개발인력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⑱ 연구시설기자재	종
⑲ 건물 형태	[] 건물 전체	[] 소유 [] 임대	대지		m ² , 건물	m ²
	[] 독립공간	[] 소유 [] 임대	m ²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m ²
⑳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 운영비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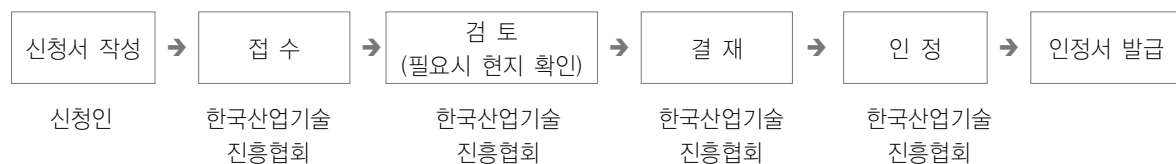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조직도 1부 6.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	---	-----------

신고서 작성방법

-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⑦의 “재무 현황”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 ⑩의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 ◇ ⑪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 ⑬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 ⑭의 “소재지”란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 ⑮의 “연구 분야”란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은 ⑯의 “주 연구 내용”에 적습니다.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정보처리를 선택합니다.
- ◇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 ⑱의 “연구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 ⑲의 “건물 형태”란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대지면적과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전용면적 30㎡ 이하만 해당합니다)
- ◇ ⑳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연구개발전담부서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고서류 처리 절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0>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소재지:

3.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뒤 쪽)

변경신고 사항		구 비 서 류
기업체	명 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소 재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 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정 기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유형(대, 중, 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연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사유가 기재된 공문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 재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근무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모두 기재)
	연구개발인력	
	연구용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면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합병사실이 등록된 것)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신고 시 구비서류 일체(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된 것) 	

작성방법

1. 변경 전 사항은 전부 적고 변경 후 사항은 해당 사항만 적습니다.
2. 주소지가 빌딩 내에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적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94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1조 (목적) 신고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영리연구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5. 10. 20>

제2조 (정의) 이 신고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②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이하 “연구소 직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3. 연구관리직원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자로서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③ “연구시설”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연

구공간 안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연구활동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신고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체 안에 2개 이상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연구소”라 함은 동일한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5년 이내에 설립한 연구소를 말한다.

⑤ 영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를 운영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7인 이상으로 한다.

⑥ 영리연구법인은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상 “70”(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4조 (정보처리분야 등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2항, 동조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분야는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세세분류(Sub-Classes)상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2021, 62022, 62090, 63111, 63112, 63120, 63991, 63999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동조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재외동포는 포함하고 산업연수생은 제외한다)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1. 일반대학원(주간) 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동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4. <삭제 2005. 7. 6>

제6조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에 한한다)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중 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05. 10. 20>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자재 및 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건축법상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건물 안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⑤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 내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영 제15조제1항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연구소등의 신고사항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전담부서의 직원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회사 조직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식은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제8조 (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협회장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 협회장은 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영리연구법인 신고서 또는 규칙 제8조 및 신고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영리연구법인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코자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연구소·영리연구법인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2. 분실한 때
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④ 협회장은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시에는 연구소 등의 변경신고 등 의무사항 불이행사와 부실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장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신고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5.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한함)

제13조 (현지확인 실시)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 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변경신고 및 연구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연구소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보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취소 등)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소·영리연구법인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기업체·영리연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당해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신고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된 경우에는 2001년 12월말까지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7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3-10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2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29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40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14조 (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

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체)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9, 2013.3.23>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제15조(보험가입 등)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 ④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체)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9>
-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4>
-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9>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9.9>

[별표 1] <개정 2011.9.9>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정기 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대학·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교육·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고

정기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별표 2] <개정 2013.3.2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시기 및 주기	교육 내용
1. 신규교육	18 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2. 보수교육	12 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한정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보험가입 보고서

보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가입내역	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보험명	보험기간
	가입금액	가입대상자 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1978. 9	대통령,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구소 설립 권장
1979. 2	「민간연구소설립추진협의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前身)」 발족
1981. 7	과학기술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업무 개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참여근거(기술개발촉진법) 마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 신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신설
1982. 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상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 신설
1983. 9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실시
1985.12	중소기업 연구소에 대한 인적신고요건 완화(자연계 학사 5인 이상) 정보처리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자연계 여부 불문)
1986. 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참여근거(공업발전법) 마련
1986. 3	과학기술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관리 및 지원요령」 시행
1989.12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업무의 민간위탁규정 신설
1990.1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연구소에 대한 인적신고요건(자연계 학사 3인 이상) 마련
1991.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신고·관리업무 수탁·수행
1994. 5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소에 대한 연구전담요원 자격 제한요건 완화
1997. 1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 도입 벤처기업 연구소의 경우 대표자가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조치
2001. 7	창업 5년미만 벤처기업 연구소에 인적신고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인적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2005. 7	대규모 유통업 연구전담요원 7인 이하로 완화
2005.10	전용면적 30㎡ 이하인 정보처리업에 대해서 독립공간요건 완화
2009. 7	중소기업 연구소에 인적신고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2년간 한시 적용)
2010.10	연구소 인정처리기간 단축(30일→10일)
2011. 1	연구소/전담부서 통합관리 시스템 오픈(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완료)
2011. 3	연구원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창업 5년 조항 삭제
2011.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 이관 지식서비스분야(11개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도입 소기업 인적신고요건 완화기간 연장, 중기업은 5인으로 환원(기 인정기업은 1년간 유예)
2012. 9	소기업 연구소에 인적신고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향구화)
2012.10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2014. 1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으로 완화(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으로 완화(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전용면적 30㎡ 이하인 소기업 연구소의 독립공간요건 완화 지식서비스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확대(출판업 등 5개분야)

- 1978.9 :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수출진흥확대회의 치사에서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연구소 설립이 필요함을 말씀하셨고, 이는 정부가 민간연구소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됨
- 1978.12 : 상공부는 1979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상공부 고시 제78-35호) 발표를 통해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에 시험 또는 연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재료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추천하는 분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예외를 인정함
 - 이에 따라 공진청은 공진청 고시(제13,729호)로 ‘연구기관의 시험·연구용재료의 수입추천요령’을 공고함. 공고에서는 민간연구소란 ‘공진청에 등록된 연구소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신고절차를 규정함
- 1979.2 : 정부의 민간연구소설립 촉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당시 기술연구소를 자체 설립하여 운영하던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연구소설립추진협의회가 발족되고, 동 협의회는 1980년 2월에 사단법인 민간기술연구소협회로, 1982년 2월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개편 됨
- 1981.7 : 1981년 5월 상공부는 1981년도 하반기 및 1982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상공부 고시 제81-19호) 발표를 통해 민간연구소에 대한 수입추천 승인권자를 공업진흥청장에서 과학기술처장관으로 변경함
 - 이에 근거하여 과기처는 1981년 7월 민간연구소의 시험연구용 시설 및 재료 수입추천요령(과기처 고시 제33호)을 발표함. 동 고시에서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란 ‘기술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독립된 연구시설 및 연구요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1981년 10월, ‘기술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개발용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제도 신설
 - 1981년 12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 1981년 6월,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신설
- 1982.5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촉진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법령상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이 신설됨

- 1983.9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연구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신설됨
- 1985.12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이 중소기업, 국외, 그 외의기업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과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각각 10인에서 5인으로 완화되고 그 외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존과 같이 10인으로 규정됨. 또한 '정보처리분야'의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의 전공기준을 자연계분야를 불문하는 것으로 완화함
- 1986.1 : 공업발전법에 근거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상공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동 사업 참여근거를 신설함
- 1986.3 : 과학기술처 고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관리 및 지원요령' 공고함
- 1989.12 : 기술개발촉진법상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근거와 기업연구소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을 포함한 기술개발지원업무를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규정을 법에 신설함
- 1990.11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적요건을 3인이상(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으로 완화하는 조문을 신설함
- 1991.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기업연구소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1994.5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완화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 전공여부 불문 분야를 '산업디자인분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함
- 1997.1 :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규정되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규정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가 새롭게 도입됨
- 1998.8 : 기업연구소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될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01.7 :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인적요건이 연구전담요원수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함)으로 완화됨
 - 벤처기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유형별 인적요건 기준에 벤처기업 인적요건 기준이 신설되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으로 규정됨
- 2005.7 : 대규모 유통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연구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통점포’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수를 1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완화함(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1호)
- 2005.10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공간으로 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부서와 구분하여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 2009.7 : 중소기업연구소 인적요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2009.7.1~2011.6.30)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함
- 2010.10 : 연구소·전담부서의 신규·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교과부 고시 제2010-40호 제9조 개정)
- 2011.1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신규·변경 온라인 업무처리를 시작함
- 2011.3 :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인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에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2001.7)’는 단서조항이 삭제됨
- 2011.7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산업기술에 대한 정책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됨)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근거법령인 기술개발촉진법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로 남게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근거법령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령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 2011.7 : 기존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인정하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분야에 ‘지식기반서비스분야’가 추가되면서 기업연구소 인정분야가 제품개발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로 구분되었으며,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분야로 소매 등 11개 업종이 추가됨
 - 11개 업종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업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명시함
 - 11개 업종 선정은 R&D집중도가 높은 업종분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정책적육성이 필요한 분야 등을 기준으로 함
- 2011.7 : 중소기업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기업유형이 구분됨. 그중 중기업은 2009년 7월에 시행된 한시적 인적요건 완화(2년간 3명으로 완화)를 종료시키고 5인 이상으로 변경함. 반면에, 소기업 기업유형을 새롭게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적요건 완화(2년간 3명으로 완화)를 2년간 추가로 연장(2011.7.1~2013.6.30)함
- 2012.9 : 소기업에 대해 2년간 한시적(2011.7.1~2013.6.30)으로 인적요건을 3명으로 완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소기업의 인적요건을 3명으로 항구화함
- 2012.10 : 중소기업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충분한 연구역량이 있음에도 학력의 제한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되지 못했던 인력들이 혜택을 받게 됨
- 2014.1 :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용면적 30㎡이하인 소기업 연구소의 독립공간 요건을 완화함.
 - 지식서비스산업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11개분야에서 5개분야(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관련서비스업)를 추가하여 총 16개분야로 확대함.
 - 또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의 연구전담요원 7인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기존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3. 지식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시행 및 확대

❖ 지식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시행('11.7)

- (배경) 기존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였으나, 민간 R&D 활성화대책('09. 7, 위기관리대책회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10.9,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 결정

- 이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기초로 소매 등 11개 업종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분야로 선정하고, 시행령 개정 시행

※ 시행령 제2조(정의)에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규정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매	4711, 4731, 4781, 4791
정보서비스	6311 ~ 639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7211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 인정분야 확대('14.1.1)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확대 추진
 - 기재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경제관계 장관회의, 7.4)에서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촉진
 - *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기재부,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7.11)에서 (인문·기술 융합 촉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

-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하여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광고업, 영화 등 제작 및 배급업, 출판업, 부가통신업,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 추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확대〉

시행(2011.7 (11개분야))	확대(2014.1 (16개분야))
위생서비스(산업), 소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기관(산업), 의료 및 보건(산업), 문화서비스(기타)	출판,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광고,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등 5개 분야 추가

4.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12.28>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5. 보전산지 전용 추천

❖ 산지의 구분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고 있음.

〈산지에 대한 정의(산지관리법 제2조)〉

-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
-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보전산지의 전용

-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에 기업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용가능(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3호〉

- ①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제1호〉

- ⑨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3.3.23>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보전산지 전용 절차



① 보전산지 추천의뢰

- 첨부서류: 전임지 편입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사용승락서,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연구소 신축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사본 등

* 연구소 신축계획서에는 회사개요(기업 및 연구소 현황, 연구개발활동 실적), 연구개발 전략(연구 개발 필요성 및 계획), 연구소 운영계획(연구소 신축계획 및, 연구소 신축에 따른 연구인력 총원계획, 연구개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첨부도면: 현장사진, 위치도(1/25,000), 보전임지편입 현황도(1/3,000), 지적도(1/3,000), 현황측량도(1/3,000), 세부조성계획도(1/3,000) 등

② 추천여부 검토 및 결정: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소 신·증축의 필요성, 규제지역 내에서의 신축부지 선정의 타당성, 위치선정의 적합성, 전용면적의 규모 등 효율적 연구수행 측면에서의 적합성,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
- 추천승인으로 결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해당면적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지자체 및 신청기업)

③ 보전산지 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제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법, 지목, 면적, 소요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가 포함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
- 축적 1/6,000내지 1/12,000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보전산지 전용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구분		10,000㎡ 미만	10,000㎡ ~ 1,000,000㎡미만	1,000,000㎡이상
공유림·사유림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산림청장
국유림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장	
	기타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

④ 대체산림조성비 납부

- 산림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납부 하여야 함

⑤ 보전산지 전용허가

-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함

❖ 보전산지 전용 사후관리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방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전산지 추천의뢰서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추 천 의뢰 서			
신 청 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산림의 소재지			
추천의뢰 면적			
사업목적			
사업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 신축을 위하여 추천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대 표 :</p> <p>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p>			
첨 부 서 류		첨 부 도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지 편입토지조서 2. 등기부등본 3. 임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토지사용승락서 6. 연구소 신축계획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황사진 2. 위치도(1/25,000) 3. 보전임지편입 현황도(1/3,000) 4. 현황측량도(1/3,000) 5. 지적평면도(1/3,000) 6. 세부조성계획도(1/3,000) 	

6. 연구소 주요지원제도

〈기업연구소 주요지원제도 요약〉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조세지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를 세액공제 (대기업은 증가발생분의 40% 또는 당해 연도 발생분의 3~4% 적용, 중견기업은 증가발생분의 40% 또는 당해연도 발생분의 8% 적용)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내 투자도 적용가능)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구분	제 도 명	제 도 개 관	연구소	전담부서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Techno Doctor) <미래창조과학부>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해당 인력에 대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
	청년취업인턴제사업 <고용노동부>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時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時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원제도는 법률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개요 :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상의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50%
 - * 2011년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 15%, 이후 2년간 : 1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3~4%)*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 * 공제율(%) = 3 + (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00×0.5
- 단, 공제율의 한도는 4%이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함

○ 연평균발생액의 계산

-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최대4)}}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12}$$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 증가발생기준 적용여부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액발생기준만 적용 가능

-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
 -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로 인정
 -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로 불인정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 6])

구분	비 용
1. 연구 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②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등만 해당한다)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구분	비 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 개발	가. 위탁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삭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개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신성장동력분야

- 조특법 시행령[별표 7]상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원천기술분야

- 조특법 시행령[별표 8]상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공제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30%
- 대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20%

○ 특이사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
 -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함
-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규정 미적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세액공제 적용시 정부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 2)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개요 :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 시설
 -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자산(무형고정자산 및 건축물 등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동일(운휴중인 것 제외)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히, 실용신안, NET(신기술)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 공제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설비투자금액 × 10%

- 중견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설비투자금액 \times 5%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설비투자금액 \times 3%

○ 특이사항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증설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부대비용 포함)의 경우 미적용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1일 0.03%(연 10.95%)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소기업투자(조특법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제24조), 고용창출투자(제26조) 등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 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4. 기업부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부동산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직접사용에 한함)

- 과세시점에서 요건미비로 과세되어도 사후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기과세된 취득세는 취소(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없음)

○ 면제세제

• 취득세 및 재산세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경우 면제가능(타 용도 변경시 불가)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으로 면제여부를 판단

○ 특이사항

- 연구소를 설치* 한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의미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적용기간: 201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감면대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3

5.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개요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적용범위

-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비과세 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원 한도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6.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개요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 적용범위물품

- 매년 품목 조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관세감면 고시물품[별표 1]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감면비율 : 관세액의 80%

○ 사후관리

- 관세감면 물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음(단, 세관장 승인물품 제외)
 - 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 : 3년 / 4년인 물품 : 2년 / 3년 이하 물품 : 1년 이내
 -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적은 물품 : 1년 이내
 -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 1년 이내

○ 신청절차

- 수입신고수리전(보통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기획팀 (02)3460-9032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77-8577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22

7. 전문연구요원제도

- 개요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지원대상
 - 병역 지정업체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가능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 가능
- 지원절차
 -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 매년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매년 5, 12월에 설명회 개최)
 - 선정 추천 : 매년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추천요령: 지정업체 추천권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A~J등급)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
 -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장은 추천기관(미래창조과학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상위등급)에 대해서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
 - 선정기간 : 매년 상반기(4월) / 하반기(10월)
 - 병무청장은 연구분야(자연계 기업, 대학, 방위산업 등)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차등 배정함(연구성과, 채용률, 관리상태 등 고려)
 - 결과 통보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함

- 한편, 상반기(1월)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기존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매년 6월 신청기간 내에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보해야 함
- 미신청시 다음 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승인을 받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02)3460-9089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02)2110-2574
 병무청 대전본청 (042)481-2813

8.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 개요 :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연구소를 퇴직한 과학기술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연구소를 보유한 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고용보험가입 기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제외
 - 퇴직과학기술자
 -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접수마감일 사이에 채용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대학 부교수 이상, 대기업 연구소 책임급(차장)이상 퇴직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연구·기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사업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과학기술자
 - * 주별 3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최장 2년 10개월
 - *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인원 : 중소기업당 1명 지원
 - 정부지원금 : 6,120만원(3차년까지 지원 받을 경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02)3460-9122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7

9.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개요 :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해당 인력에 대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 완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각 차수별 접수 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특성화고,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최대 2년
 - ※ 연차별 지속지원여부는 평가를 통하여 1년 단위로 협약 후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별 2명 지원
 - • 정부지원금 : 학사기준 2,530만원(2차년까지 지원 받을 경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4, 9083, 9090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1661-1357

10.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 개요 :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

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단,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 11항 참조):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300인 이하), 금융 및 보험업 등(2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등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 개인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재학생 제외(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정함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인턴약정서상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최고 6개월)
- 지원한도 : 최고 월 80만원
- 채용한도 :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에서 채용가능
- 추가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시 추가지원(매월 65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02)3460-9084, 9086

서초고용센터 취업지원과 (02)580-494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발행인 박 용 현

편집인 김 이 환

발행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주 소 (137-888)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